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만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20

발 의 년 월 일 :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 임만균, 남창진, 박강산, 박승진, 박유진, 박칠성, 서준오, 성흠제, 이소라, 이승미, 이원형, 정준호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에 표기된 별표 1 서울식물원 입장료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중 서울식물원란을 삭제한다.(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서울식물원란을 삭제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공 원 별		사용기준	금 액(원)
서 울 대공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3,000~6,000 2,000~4,000 1,000~2,000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4,000 1,500~3,000 1,000~2,000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공 원 별		사용기준	금 액(원)
서 울 대공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3,000~6,000 2,000~4,000 1,000~2,000
	테마가든(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4,000 1,500~3,000 1,000~2,000
서울식 물원	온실 및 주제정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10,000 3,000~7,000 2,000~5,000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개 정 안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공 원 별		사용기준	금 액(원)
서 울 대공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3,000~6,000 2,000~4,000 1,000~2,000
	테마가든(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4,000 1,500~3,000 1,000~2,000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 중 서울식물원란을 삭제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며 서울식물원 공원입장료는 별도의 다른 조례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